

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9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 24.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사유

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와 관련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범위 및 용자심의위원회설치 등 기금운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특별회계의 세입의 재원 및 세출의 대상(안 제5조의1, 2)
- 나. 중소기업육성기금용자심의위원회설치 신설(안 제9조의1)

3. 참고사항

- 자치법규정비
- 입법예고 : 결과 의견내용 없음

4. 본문 : 붙임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“중소기업법” 을 “중소기업기본법”으로 “지방자치법 제133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”로 한다.

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5조의1(세입)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 전입금
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세출)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

2.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

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1(위원회의 설치) ①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운영한다

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제10조중 “군정조정위원회” 를 “위원회”로 한다

별표1 제1호 경영안정사업의 대출기간(거치기간)란 중 “2년”을 “3년(2년)”으로 하고 제2호 기술개발자금 및 제3호 시설현대화자금의 대출기간(거치기간)란 중 “3년”을 각각 “3년(2년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소기업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중소기업기본법----- 지방자치법 제133조 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의1(세입)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일반회계 전입금 2.기금의운용수익금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의2(세출)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2.기금및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경비
<p>제10조(융자대상자의 선정)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,적격여부 등을 “군정조정위원회”에서 심의 선정한다.</p>	<p>제9조의1(위원회의설치) ①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운영한다.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0조(융자대상자의 선정)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</u>-----</p>

[별표1]

<현행>

융자조건(제12조관련)

세부사업명 및 용도	대출기간 (거치기간)	지원한도액	비고
1.경영 안정 사업	<u>2년</u>	1억원 이내	
2.기술 개발 자금	3년	1억원 이내	
3.시설현대화자금	3년	1억원 이내	
4.유통현대화자금 o시장재개발자금	15년 <u>(5년)</u>	8억원 이내	

<개정안>

융자조건(12조관련)

세부사업명 및 용도	융자기간	지원한도액	비고
1.경영 안정 사업	<u>3년(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)</u>	1억원 이내	
2.기술 개발 자금	<u>3년(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)</u>	1억원 이내	
3.시설현대화자금	<u>3년(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)</u>	1억원 이내	
4.유통현대화자금 o시장재개발자금	15년 <u>(5년거치 10년균분상환)</u>	8억원 이내	